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케이비캐피탈(주)

2. 제재조치일 : 2020. 9. 17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시정명령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시정명령사항

(1)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의무 위반

□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 등에 의하면 수수료, 사례금,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중개수수료라 하며,

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*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* (5백만원 이하) 5%, (5백만원 초과 10백만원 이하) 25만원 +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%, (10백만원 초과) 45만원 +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%

○ 케이비캐피탈(주)는 2016.1.4.~2018.9.30. 기간 중 (주)○○○○○○○ 등 189개 대출모집인(제휴점)이 중개한 중고차대출에 대하여 대출 건별로 1차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

대출모집인(제휴점)별 중고차대출 실적에 따라 '판촉비' 명목 등으로 2차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대출모집인(제휴점)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법정 상한 보다 114억원 초과하여 지급하였음

<관련규정>

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
2. 舊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의8